

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 
 (전화: 1544-0770)  
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
 06595



2020년 10월 06일 제작 [ 접수국 : 서울법원청사우체국 ]

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 
 272, 2317동 1004호(신안인스빌아파트) 주식회사 이노드

사내이사 임영무 귀하  
 12061

## 통 지 서

각통 제 5654-2 호  
 법인<sup>1)</sup>의 표시 : "전면"받는 사람의 표시와 같음  
 최후 등기 연월일 : 2015.01.30  
 최후 등기사항 : 임원

귀 법인은 위와 같이 최후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2020년 12월 07일까지 상법 시행령 제28조<sup>2)</sup>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(사업)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2020년 10월 05일자 관보에 공고하였음을 상법 제520조의2 제2항(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, 제102조의2)에 따라 통지합니다.

2020년 10월 05일

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



1. 위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을 때에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(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, 제102조의2)에 따라 신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해산등기를 할 수 있으며, 그 후 아무런 등기 없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종결등기(등기부 폐쇄)를 할 수 있습니다.
2. 영업(사업)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할 때 이 통지서를 첨부하면 신고서<sup>3)</sup>에 법인인감을 날인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3. 본 통지서는 대표자의 현 주소지로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.(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,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참조)

1) 주식회사, 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  
 2)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참조  
 3)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 자료센터의 법인등기 양식 참조